

##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2021년도 주요 · 변경사항

#### ○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 · 운영 변경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 ○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변동 : (제31회) 180명 → (제32회) 200명

## 1. 최소합격인원

○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200명

##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면제서류 접수·심사	원서접수 (동시접수)	시험장소 공 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 험	01. 11.(월) 09:00 ~	01. 18.(월) 09: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부산 대구·광주 대전	04. 24.(토)	06. 02.(수)
제2차 시 험	01. 22.(금) 17:00	01. 22.(금) 18:00	07. 26.(월) 공지	서울·부산	08. 07.(토)	11. 10.(수)

※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 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구 분	시 험 과 목
제1차 시 험	①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② 경제학원론 ③ 부동산학원론 ④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⑤ 회계학 ⑥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제2차 시 험	① 감정평가실무 ② 감정평가이론 ③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교시	① 민법(총칙, 물권) ② 경제학원론 ③ 부동산학원론	09:00	09:30 ~ 11:30(120분)	객관식 5지 택일형	
	2교시	④ 감정평가 관계 법규 ⑤ 회계학	11:50	12:00 ~ 13:20(80분)		
제2차 시험	1교시	① 감정평가실무	09:00	09:30 ~ 11:10(100분)	주관식	
	<b>중식시간 11:10 ~ 12:30 (80분)</b>					
	2교시	② 감정평가이론	12:30	12:40 ~ 14:20(100분)		
	3교시	③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14:40	14:50 ~ 16:30(100분)		

※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으로 시험시간 연장 시 수험인원과 효율적인 시험 집행을 고려하여 시행기관에서 휴식시간 및 중식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 다. 출제영역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http://www.Q-Net.or.kr/site/value)) 자료실 게재

###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가. 응시자격 : 없음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2021. 11. 10.)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나. 결격사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7)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5. 합격자 결정

가. 합격자 결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 제1차 시험

-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

### ○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함

나.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 6. 제1차 시험 면제

### 가.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 ‘제1차 시험 면제자’ 응시유형으로 원서접수 (2021년도 시험에 한함)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 응시자’ 응시유형으로 접수 및 1차 시험 재응시
  - 원서접수 시 “재 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 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 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  
(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다시 입력)

###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다음 기관에서 제2차 시험 시행일 현재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 제출 서류에 다음 법정기관, 면제대상 기관, 면제대상 업무가 모두 명확히 명시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 가능

(예 : 국세청 재산세과에서 실제 기준시가 조사·결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업무분장표 등 제출한 서류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인정 불가)

법정기관	면제대상 업무	면제대상 기관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한국감정평가사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li> <li>※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평가법인</li> <li>• 감정평가사사무소</li> <li>• 한국감정평가사협회</li> </ul>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li> <li>※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li> <li>• 타당성조사, 평가검토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li> </ul>
5. 국유재산 관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li> <li>: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구 국유재산과)</li> </ul>

6. 감정평가업무 지도·감독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li> <li>•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운영 및 지도·감독</li> <li>•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관(구 토지국)</li> <li>• 중앙토지수용위원회</li> <li>• 지방국토관리청 : 보상과</li> <li>• 국토관리사무소 : 운영지원과 (구 국도유지사무소 : 관리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li> </ul>
7.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를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li> <li>•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li> </ul>
8.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수행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비주거용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li> </ul>
9. 과세시가표준액 조사·결정 업무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사·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li> <li>• 시·도·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시가의 조사·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및 소속기관 : 재산세 관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li> </ul>

## 7.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안내

가. 제출기간 : 2021. 01. 11.(월) 09:00 ~ 01. 22.(금) 17:00 [10일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면제서류 심사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서류 제출기간 초반에 제출을 권장함

### 나. 경력서류 제출 면제

○ 2008년 이후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일부 면제를 위해 경력증명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람은 동일서류 제출 면제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 다.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 서류 제출 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02-2137-0551~9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051-330-1961~4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053-580-2351~3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61008	062-970-1771~5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35000	042-580-9151~5

※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제출 기관에 2021. 01. 22.(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에 반드시 “감정평가사시험 경력증명서 재중” 표기

※ 2021년 공단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및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 참고(추후 공지)

## 라. 업무 종사기간 산정

○ 경력 산정 기준일 : 제2차 시험 시행일[2021. 08. 07.(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거함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 각 기간을 합산

○ 제출기간 내 경력기간(5년)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경력서류를 제출기간에 제출 후, 기간이 충족된 보완 서류를 2021 08. 07.(토) 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 무효 처리

※ 경력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였음이 확인(필요 시 방문 확인)되는 경우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 간 시험응시 제한

## 마. 근무기관별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모든 근무기관 공통으로 수험자가 직접 작성 제출

### ■ 공통서류

① 감정평가사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별지1】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2】 1부.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근무자

■ 공통서류 및 다음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 【별지3】 원본 1부.

- 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중 선택 1부.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4대 보험 조회)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등 근무처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서류

■ 공통서류 및 다음 세 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 【별지3】 원본 1부.

- 응시자 본인이 직접 기재작성(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생략)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첨부) 중 선택 1부.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4대 보험 조회)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③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입증인 1인의 사실확인서 【별지4】와 함께 입증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

※ 【별지】 서식은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가입증명원은 인터넷 출력물도 제출 가능 (단, 인터넷 원본대조 식별번호가 있어야 함)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세무서)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무처 발행)은 사본제출도 가능하나 반드시 발급자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근무자

■ 공통서류 및 다음 서류 제출

① 한국부동산원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 (1)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또는 감독하는 기관
- (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3)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4)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 (5)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공통서류 및 다음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 ① 공무원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원본 1부
- ② 인사기록카드(발급담당자 기재 및 원본대조필한 것에 한함) 사본 1부.

※ 공무원의 경우 경력증명서와 인사기록카드 모두 담당사무가 미기재되어 담당 업무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동안의 업무분장 사본(문서생산 기관의 원본대조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단,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 양식의 경력증명서(【별지3】 활용 또는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담당업무를 명시하여 소속기관장 직인날인 제출)

## 8. 공인어학성적

가.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시험명	토플		토플	토플	지텔프	플렉스	토플	아이 엘츠
	PBT	IBT						
일반 응시자	530	71	700	340	65 (level-2)	625	640 (Advanced)	4.5 (Overall Band Score)
청각 장애인	352	-	350	204	43 (level-2)	375	145 (Advanced)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2019. 01. 23. ~ 2021. 01. 22.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 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인정
  - ※ 단,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 및 성적확인 동의서 스캔본 1부 전자우편(exam@hrdkorea.or.kr) 제출 및 유선연락 (052-714-8484) (양식은 큐넷 감정평가사 자료실 등재)
- 제출방법 :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 입력  
(국내 시행 TOEIC, TEPS 및 G-TELP의 경우 온라인(다이렉트) 제출만 가능)
  -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이용 방법 >**

- 큐넷 메뉴 :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 선택 ☞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선택 ☞ 하단의 공인어학성적 제출하기 선택 ☞ 시험종류 선택 및 생년월일 입력 ☞ 어학성적 조회하기 선택 ☞ 어학기관 로그인 후 본인성적 리스트 중 원하는 어학성적 선택 ☞ 점수 및 입력 확인 후 하단의 제출하기 선택 ☞ 자동 승인 후 승인된 어학성적 확인
- 승인 내역은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과거 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
- 서비스 무상제공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음

-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해당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공인어학성적 입력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21. 04. 19.(월)까지 국가자격 시험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 자료로 성적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사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확인가능

**9.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1·2차 시험 동시 접수)**

- 2021. 01. 18.(월) 09:00 ~ 01. 22.(금) 18:00 [5일간]
- ※ 제1차 시험 면제자 경력서류 제출 : 2021. 01. 11.(월) 09:00 ~ 01. 22.(금) 17:00
- ※ 면제서류 심사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서류 제출기간 초반 [01. 11.(월) ~ 01. 15.(금)]에 제출을 권장함
- ※ 제2차 시험만 응시코자 하는 경우(전년도 1차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함
-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추가접수 없음)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 '제1차 시험 면제자' 응시유형으로 원서접수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응시자' 응시유형으로 접수 및 1차 시험 재응시
  -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  
(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표 재입력)

## 나. 접수방법

- Q-Net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value>)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 (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4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 라. 수수료 환불(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환불은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value>) ⇨ “마이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원할 시에는 큐넷 메인 홈페이지 자료실 ⇨ 각종 서식에서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

구 분	환 불 기 준
100% 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li> <li>•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li> <li>•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li> </ul>
60% 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li> </ul>
50% 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li> </ul>

환불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li> <li>• 시험 결시자</li> <li>•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li> </ul>
<p>*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li> <li>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li> </ol>	

※ 수험원서 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은 인터넷(큐넷)으로만 가능

※ 접수 취소 및 환불은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만 가능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첨부)
-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재난문자,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 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제2차 시험 대상자는 2021. 07. 26.(월)이후 수험표 재출력  
(제2차 시험 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

####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 사.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장애인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10.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제1차 시험 : 2021. 04. 24.(토) 17:00 ~ 04. 30.(금) 18:00 <7일간>

####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 11.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 가.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21. 06. 02.(수) 09:00
  - 제2차 시험 : 2021. 11. 10.(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http://www.Q-Net.or.kr/site/value)) [60일간]
    - 자동안내전화 : 1666-0100 [4일간]
- ※ (가답안)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같음

### 나. 자격증 발급 및 실무수습교육 안내

- 자격증 발급자 명의 : 국토교통부 장관
  - 자격증발급 및 실무교육기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자격연수팀  
(☎ 02-3465-9906~8)
- ※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는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
-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는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함

1, 2차 응시한 최종 합격자	경력으로 1차 면제받은 최종 합격자
실무수습 기간 1년	실무수습 기간 1주일

## 12. 수험자 유의사항(안)

### 【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포,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함, 학교장(부대장)이 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정부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증,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재학증명서) 및 청소년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및 등록민간자격은 불인정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시험 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 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0점)됨**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접수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기간 이외에는 환불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 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자격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검정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http://www.Q-Net.or.kr/site/value/))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라운영 변경 안내

최근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를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험자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를 강화·운영함을 안내하오니, 수험자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 대상자격(37개) :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검수·검량·감정사, 경매사, 경비지도사, 경영·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관세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관리·서비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물류관리사,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변리사, 사회복지사1급,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손해평가사, 수산물품질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청소년상담사·지도사, 한국어능력교육검정, 행정사

2019. 8. 20.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 ☞ 인정 신분증 범위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함, 학교장(부대장)이 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정부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증,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재학증명서) 및 청소년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및 등록민간자격은 불인정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2.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통신기기(사례)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

###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별지 4】 감정평가법인 사무소, 협회의 부도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에 사업주 날인이 불가한 경우 작성**

## 사 실 확 인 서

**<수험자>**

·성명 : (한자 :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전화번호 :

근무직장명	직 위	재 직 기 간	담 당 업 무	비 고

본 사실 확인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감정평가사시험의 일부면제에 필요 경력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증명이 허위, 위조 등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사문서 위조변조 등)도 감수하겠다는 명심하고 위와 같이 입증합니다.

**<입증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근무처 : ·직 위 :  
 ·근무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응시자와의 관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관련)	
수집·이용 목적	응시자격(경력) 서류심사
수집 개인정보 항목	인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소속, 핸드폰번호, 주소,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귀 공단 내규에서 정한 문서 보존기간 동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 이 경우 경력사항 확인 불가로 국가자격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입증인 : 객관적으로 수험자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동일 사업장 또는 직종에서 근무한 자 등)  
 ▶ 위 사실확인서의 진위확인과정에서 자료보완 등을 위해 추가서류(입증인의 인감증명서, 공증확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불가·허위작성 등이 발견되면 반려되거나 관련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될 수 있음

첨 부 : 입증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끝.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5】 성적확인동의서 (일본취득 TOEIC성적 제출 시 작성)**

## Authorization

I hereby authorize the TOEIC representative in \_\_\_\_\_ to confirm for the Korea TOEIC Committee / YBM/Si-sa my TOEIC scores per the information below. On my request, the ICF may relay the scores to a third party.

First name: \_\_\_\_\_

Family name: \_\_\_\_\_

Date of birth: \_\_\_\_\_

Test site: \_\_\_\_\_

Test date: \_\_\_\_\_

Test application (admission) number: \_\_\_\_\_

Address \_\_\_\_\_ on test application form:

Telephone number on test application form: \_\_\_\_\_

● **TOEIC Score**

Listening: \_\_\_\_\_

Reading: \_\_\_\_\_

Total: \_\_\_\_\_

Please confirm the above scores and report confirmation to:

Korea TOEIC Committee / YBM/Si-sa

Jongno 98, Jongno-gu, Seoul, Korea 03191

E-mail: [check@toeic.co.kr](mailto:check@toeic.co.kr)

Telephone number: 82+2 2280-7294 / Fax number: 82+2 2280-7369

Signature of candidate, as it appears on passport: \_\_\_\_\_

Date of Authorization: \_\_\_\_\_

*Unless renewed, this Authorization will expire 90 days after the date above written, at which point this document will be destroyed.*